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5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2011년 7월 공직자윤리법 개정(10.30시행)으로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 확대 (안 제3조)

- 퇴직공직자의 취업확인과 업무취급승인 조항 신설

나. 심사기준 근거 신설 (안 제3조의2)

-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및 처분 기준이 있지만 그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

다.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안 제8조)

-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

라.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신설 (안 제11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관계부서협의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2011.10.28~11.18(21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1인을 포함한 5인”을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를 “각 호에 따라 평창군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인”을 “3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제2조제3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의회의원”을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 의원”으로, “당해 군의회의”를 “군의회의”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 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제3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평창군”을 “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평창군 의회”를 “군의회”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창군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을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 중”으로,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으로, “소속”을 “군 소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으로,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3분의 2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제6조제2항제3호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를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평창군 소속 공무원중”을 “군 소속 공무원 중”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를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당 등”을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공직자윤리법</u>」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u>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u>의 ----- -----.</p>
<p>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u>1인</u>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u>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u>한다.</p> <p>1.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 <u>3인</u></p> <p>2. <u>평창군 의회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1인</u></p> <p>② (생략)</p> <p>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u>평창군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u></p>	<p>제2조(구성) ①<u>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u>1명</u>을 포함한 5명----- ----- <u>각 호에 따라 평창군수</u>----- -----.</p> <p>1. ----- ----- <u>3명</u></p> <p>2. <u>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제1항제2호에 따라 <u>군의회 의원</u>----- ----- <u>군의회의</u> ----- -----.</p>

현행	개정안
<p>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p> <p>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p> <p>2.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p> <p>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p> <p>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p> <p>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p> <p>1. 평창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p> <p>2. 평창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p> <p><신설></p>	<p>제3조(기능) ①----- 각호-----.</p> <p>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p> <p>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p> <p>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p> <p>4. 그 밖에 ----- 따라 -----</p> <p>②----- 각호-----.</p> <p>1. 군 -----</p> <p>2. 군의회 -----</p> <p>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p>

현행	개정안
<p>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차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p> <p>②<u>평창군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u>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u>규정에 불구하고</u> <u>의회의원인</u>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u>소속 공무원인</u>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p> <p>③제2조제1항제1호의 <u>규정에 의한 위원중</u>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의 잔임기간</u>으로 한다.</p>	<p><u>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u> 정할 수 있다.</p> <p>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 <u>한차례만</u> -----.</p> <p>②<u>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u> 중----- ----- <u>규정에도 불구하고</u> <u>군의회 의원인</u> ----- ----- <u>군 소속</u> ----- -----.</p> <p>③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 ----- <u>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u>-----.</p>
<p>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p> <p>②위원장이 <u>사고가 있을 때에는</u>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u>----- -----.</p>
<p>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략)</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p>	<p>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p>

현행	개정안
<p>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조사의뢰</u>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u>조사의뢰의 승인</u></p> <p>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u>조치</u></p> <p>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u>해임</u> 또는 <u>징계의결의 요구</u></p> <p>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u>고발</u></p> <p>③ (생략)</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p> <p>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생략)</p> <p>② 간사는 <u>평창군 소속 공무원</u>중에서 <u>군수가 임명</u>한다.</p> <p>제8조(수당등) <u>위원회에 참석하는</u></p>	<p>----- ----- ----- <u>각 호</u> ----- ----- <u>3분의 2 이상</u> ----- ----- .</p> <p>1.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u>조사의뢰</u> 및 법 제8조제11항에 따른 <u>조사의뢰의 승인</u></p> <p>2. 법 제8조의2에 따른 <u>조치</u></p> <p>3. 법 제22조에 따른 ----- -----</p> <p>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에 따라 ----- ----- ----- ----- .</p> <p>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군 소속 공무원</u> 중 ----- ----- .</p> <p>제8조(수당 등) <u>군 소속 공무원이</u></p>

현행	개정안
<p>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u>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u>수당 등 경비</u>를 지급할 수 있다.</p> <p><신 설></p>	<p>아닌 위원----- 범 위에서 「<u>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 <u>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u> ----- ----- -----.</p> <p>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u>공직자윤리법 시행령</u>」과 「<u>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u>」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u>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u>”은 “<u>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u>”으로 “<u>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u>”는 “<u>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u>”로 한다.</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김 용 필
연락처	(033) 330 - 2217

관 계 법 령

□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⑫ 제11항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를 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